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백귀자 소유물건(2025타경10999)
평가서번호	가온 2501-09-4080
의뢰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상준
의뢰번호	2025타경10999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

TEL:(052) 274-8811 FAX:(052) 274-8812

제 출 문

□ 본인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신의를 좇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평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거나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의뢰인과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인은 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보수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금품·향응 및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온감정평가법인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연수

(인)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 지사장 김태우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일십억육백칠십삼만이천육백사십원정 (₩1,006,732,640.-)					
의뢰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상준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울산지방법원 경매10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백귀자 (2025타경10999)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2.05		2025.02.03 ~ 2025.02.05	2025.02.05
감정 평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62	토지	162	-	555,520,000
	건물	482.96	건물	482.96	-	451,212,640
			이하 여백			
합계						₩1,006,732,64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서창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건임.

2. 대상물건개요

2.1 토지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이하동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4년 개별지가 (원/㎡)
1	삼호동 535-9	대	148	주상용	일반상업	소로각지	부정형 평지	982,800
2	삼호동 536-11	도	14	도로	일반상업	소로한면	부정형 평지	321,400

2.2 건물

(일반건축물대장 기준)

일련 번호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535-9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구조		주용도	단독주택(다가구)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구분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사용승인일 (증 축 일)	비고
3	114.785	482.96	77.5574	326.3243	지상5층	2014.06.24 (2023.06.22)	-
	본건 전경				본건 전경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3.1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5.02.05일로 하였음.

3.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5.02.03.~2025.02.05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4. 기준가치

4.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4.2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5. 감정평가조건

5.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음.

5.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감정평가방법

6.1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 제 이론에 의거 감정평가하였음.

6.2 개별물건별 감정평가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물건(토지, 건물) 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통해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6.2.1 토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중 감정평가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비교법(비교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간 합리성을 검토하여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본건 토지는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가 아니며,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원가법(원가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바 수익환원법(수익방식)에 의한 감정평가는 제외하였음.

6.2.2 건물

건물의 감정평가방법 중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한 사례의 선정, 토지와 건물이 일괄거래되는 시장현실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배분문제 등으로 정확한 건물가액의 추출이 어렵고, 수익환원법(수익방식)은 토지와 건물에 각각 귀속된 수익가치의 산출이 난해하고,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음. 건물은 그 특성상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수익환원법 등의 적용이 곤란한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조·용도·사용자재·시공정도·부대설비 상태 등을 기초로 한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 상태, 장래 이용가능 연수 등을 종합 참작하여 관찰감가를 병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그 밖의 사항

- 본건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백귀자”임.
- 본건은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 이유로 일부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동유형의 물건, 인근 유사물건, 관련 공부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업무 진행시 내부구조, 관리상태, 리모델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2.1 비교표준지 선정

(공시기준일 : 2025.01.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5년 공시지가 (원/㎡)
A	삼호동 535-6	대	142	주상용	일반상업	소로한면	사다리 평지	987,20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선정함.

2.2 시점수정치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지가변동율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 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사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시점수정하였음. (미고시기간은 전월연장적용)

기호	시점수정치	비고
A	1.00081	경상남도 양산시 (25.01.01~25.02.05) (상업) 2024.12.01~2024.12.31:0.070 $(1+0.00070*36/31)$ ≈ 1.0008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3 지역요인비교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2.4 개별요인비교

<상업지대>

조건	항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등
접근조건	상업지역 중심 및 공공시설과의 편의성 등
환경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 등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1	A	1.00	1.00	1.00	1.03	1.00	1.00	1.030

본건은 비교표준지A와 비교하여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 등)에서 우세함.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3	A	1.00	1.00	1.00	1.03	0.33	1.00	0.340

본건은 비교표준지A와 비교하여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 등)에서 우세하나, 행정적조건(지목 및 현황 도로등)에서 열세하며 전반적으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5 그 밖의 요인 보정

2.5.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2003다 38207판결(2004.05.14.선고), 2002두 5054(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의 평가사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감정평가사례(거래사례)기준
비교표준지가액 : 감정평가사례(거래사례) × 지가변동률 × 지역요인 × 개별요인

시점수정한 비교표준지가액 : 표준지공시지가 × 지가변동률

2.5.2 감정평가사례

(자료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 HUB)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비고
1	삼호동 ○○○	대	542	주상기타	일반상업	3,400,000	법원 경매	2023-09-13	-
2	삼호동 ○○○	대	402.0	상업용	일반상업	4,010,000	담보	2023-08-01	-
3	삼호동 ○○○	대	345.0	단독주택	일반상업	2,960,000	담보	2024-09-03	-
4	평산동 ○○○	대	721.5	상업용	일반상업	3,500,000	법원 경매	2024-06-0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5.3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토지건물일괄 거래가격(원)	토지 배분단가 (원/㎡)	거래시점
a	평산동 ○○○	대	126.60	상업용	일반상업	600,000,000	3,520,000	2022-02-19

구조(사용승인일자):일반철골구조, 3층(2016.10.17)

용도:근린생활시설

건물연면적:234.78㎡

건물가격산정:(750,000원/㎡x35/40)x234.78㎡=154,074,375원

토지가격배분:600,000,000원-154,074,375원=445,925,625원(토지단가:3,520,000원/㎡)

2.5.4 참고사례

(출처: KAIS-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토지건물일괄 거래가격(원)	토지 배분단가 (원/㎡)	거래시점
b	삼호동 ○○○	대	208	주상용	일반상업	900,000,000	3,440,000	2022-06-30

구조(사용승인일자):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3층(1999.08.26)

용도:근린생활시설및주택

건물연면적:362.66㎡

건물가격산정:(900,000원/㎡x28/50)x362.66㎡=182,780,640원

토지가격배분:900,000,000원-182,780,640원=717,219,360원(토지단가:3,440,000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5.5 감정평가사례(거래사례) 선정 및 이유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감정평가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감정평가사례 1>을 선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목적	기준시점	비고
1	삼호동 ○○○	대	542	주상기타	일반상업	3,400,000	법원 경매	2023-09-13	-

2.5.6 격차율 산정

기호	사례토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1	3,400,000	-	1.01275	1.000	1.030	3,546,650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A	987,200	1.00081	-	-	987,999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격차율산정		3,546,650/987,999				3.589	
시점수정치		경상남도 양산시 (23.09.13~25.02.05) (상업) : 1.01275					
지역요인 비교치		평가사례는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0)					
개별요인 비교치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격차율 누계
비교표준지A/ 감정평가사례	1.03	1.00	1.00	1.00	1.00	1.00	1.030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5.7 인근지역 시세 수준

구분	시세수준(원/㎡)	비고
본건과 유사한 토지	3,500,000~3,700,000원/㎡ 내외 수준인 것으로 탐문조사 됨.	토지의 위치, 접면도로 상태, 형상 등에 따라 가격 차이 있음.

2.5.8 경매통계분석

(자료출처: 부동산태인)

구분	용도	양산시			삼호동		
		낙찰가율	평균 낙찰가율	낙찰 건수	낙찰가율	평균 낙찰가율	낙찰 건수
최근 1년간평균	단독주택	54.27%	52.18%	7	67.99%	67.99%	1
최근 6개월평균	단독주택	46.41%	56.03%	4	0.00%	0.00%	0

2.5.9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감정평가사례, 거래사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시 되며 인근지역 지가수준 및 감정평가사례, 거래사례 등을 검토할 때 산정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음.

비교표준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비교표준지A	3.58

2.6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결정단가

기호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987,200	1.00081	1.000	1.030	3.58	3,643,149	3,640,000
3	987,200	1.00081	1.000	0.340	3.58	1,202,593	1,2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3.1 거래사례 선정

3.1.1 선정기준

토지만의 거래사례이거나 토지만의 거래가액이 분리 가능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로서 인근지역 내의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상태,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함.

가. 거래사례

(자료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토지건물일괄 거래가격(원)	토지 배분단가 (원/㎡)	거래시점
a	평산동 ○○○	대	126.60	상업용	일반상업	600,000,000	3,520,000	2022-02-19

구조(사용승인일자):일반철골구조, 3층(2016.10.17)

용도:근린생활시설

건물연면적:234.78㎡

건물가격산정:(750,000원/㎡x35/40)x234.78㎡=154,074,375원

토지가격배분:600,000,000원-154,074,375원=445,925,625원(토지단가:3,520,000원/㎡)

3.1.2 비교 거래사례 선정 및 이유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 a>를 선정하였음.

3.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3 시점수정

기호	시점수정치	비고
a	1.02557	경상남도 양산시 (22.02.19~25.02.06) (상업) 2022.02.01~2022.02.28:0.146 2022.03.01~2022.03.31:0.213 2022.04.01~2022.04.30:0.242 2022.05.01~2022.05.31:0.336 2022.06.01~2022.06.30:0.193 2022.07.01~2022.07.31:0.168 2022.08.01~2022.08.31:0.134 2022.09.01~2022.09.30:0.096 2022.10.01~2022.10.31:0.062 2022.11.01~2022.11.30:-0.060 2022.12.01~2022.12.31:0.004 2023.01.01~2023.12.31:-0.088 2024.01.01~2024.12.31:1.097 2024.12.01~2024.12.31:0.070 $(1+0.00146*10/28)*(1+0.00213)*(1+0.00242)*(1+0.00336)*(1+0.00193)*(1+0.00168)*(1+0.00134)*(1+0.00096)*(1+0.00062)*(1-0.00060)*(1+0.00004)*(1-0.00088)*(1+0.01097)*(1+0.00070*37/31)$ ≈ 1.02557

3.4 지역요인비교

대상 토지와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3.5 개별요인비교

일련 번호	거래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a	1.00	1.00	1.00	1.03	1.00	1.00	1.030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 등)에서 우세함.

일련 번호	거래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3	a	1.00	1.00	1.00	1.03	0.33	1.00	0.340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 등)에서 우세하나, 행정적조건(지목 및 현황 도로등)에서 열세하며 전반적으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결정단가

일련 번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3,520,000	1.000	1.02557	1.000	1.030	3,718,306	3,720,000
3	3,520,000	1.000	1.02557	1.000	0.340	1,227,402	1,23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토지시산가액 검토 및 결정

4.1 토지 시산가액

일련번호	면적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단가 (원/㎡)	시산가액(원)	단가 (원/㎡)	시산가액(원)
1	148	3,640,000	538,720,000	3,720,000	550,560,000
3	14	1,200,000	16,800,000	1,230,000	17,220,000

4.2 토지 시산가액 검토 및 결정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일련번호	면적(㎡)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공부	사정			
1	148	148	3,640,000	538,720,000	-
3	14	14	1,200,000	16,800,000	-
합계	162	162	-	555,52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건물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건물 감정평가액 산출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서,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건물을 감정평가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재조달원가

2.1 표준단가 결정

2.1.1 표준단가수준

(출처: 2024년 기준 한국부동산원 발간 건물신축단가표)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원/㎡)	내용연수
1-3-5-2	다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 아스파트싱글	3	1,561,000	50 (45 ~ 55)
4-1-5-7	점포및상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	1,262,000	50 (45 ~ 55)

2.1.3 표준단가 결정

상기에서 제시된 표준단가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등을 고려하되 실제 투하된 공사비용 및 마감자재 수준, 기본 설비사양 등 건축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표준단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일련번호	층수	용도	구조	표준단가 (원/㎡)	사용승인일 (증 축 일)
2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계단실)	철근콘크리트구조	700,000	2014-06-24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철근콘크리트구조	1,100,000	2014-06-24
	3,4층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1,300,000	2014-06-24
	5층	다가주택	경량철골구조	900,000	(2023-06-2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2 부대설비 보정단가 결정

설비종류	보정단가 (원/㎡)	비고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등	표준단가에 포함	-

2.3 재조달원가 결정

상기 사항을 기준으로 사용자재의 품질, 시공방법 및 시공정도 등을 비교하고,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본건에 적용할 재조달원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일련번호	층수	표준단가 (원/㎡)	보정단가 (원/㎡)	재조달원가 (원/㎡)	비고
2	1층	700,000	표준단가에 포함	700,000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계단실)
	2층	1,100,000		1,100,000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3,4층	1,300,000		1,300,000	단독주택
	5층	900,000		900,000	다가구주택

3. 감가수정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감가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그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하였음.

일련번호	층수	내용연수	실제 경과연수	유효 경과연수	잔존 내용연수	사용승인일 (증 축 일)
2	1~4층	50	10	10	40	2014-06-24
	5층	41	1	1	40	(2023-06-2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건물단가 결정

일련번호	층수	재조달원가 (원/㎡)	내용년수	잔존년수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2	1층	700,000	50	40	560,000	560,000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계단실)
	2층	1,100,000	50	40	880,000	880,000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3,4층	1,300,000	50	40	1,040,000	1,040,000	단독주택
	5층	900,000	41	40	878,049	878,000	다가구주택

5. 건물 감정평가액 결정

일련번호	층수	면적(㎡)		결정단가 (원/㎡)	평가금액(원)	비고
		공부면적	사정면적			
2	1층	30.03	30.03	560,000	16,816,800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계단실)
	2층	114.78	114.78	880,000	101,006,400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3,4층	225.27	225.27	1,040,000	234,280,800	단독주택
	5층	112.88	112.88	878,000	99,108,640	다가구주택
합계		482.96	482.96	-	451,212,64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구분	일련 번호	면적(㎡)		적용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공부	사정			
토지	1,3	162	162	-	555,520,000	-
건물	2	482.96	482.96	-	451,212,640	-
합계					1,006,732,640	-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 감정평가사례와 거래사례가격, 가격수준, 다른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감정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제반 법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535-9	대	일반상업지역	148	148	3,640,000	538,720,000	
2	"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연호4길14	535-9	단독주택 (다가구)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 구조,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5층 1층 2층 3층 4층 5층	30.03	30.03	560,000	16,816,800	700,000 x 40/50 근린생활시설 ,계단실
					114.78	114.78	880,000	101,006,400	1,100,000 x 40/50 근린생활시설
					114.78	225.27	1,040,000	234,280,800	1,300,000 x 40/50
					110.49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 구조
					112.88	112.88	878,000	99,108,640	900,000 x 40/41 다가구주택 경량철골구조
3	"	536-11	도로	일반상업지역	14	14	1,200,000	16,800,000	
합 계							₩ 1,006,732,64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3. 형태 및 이용상태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서창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관공서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부정형 평지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부정형 평지로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3):
남동측으로 노폭 약8m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3~4m 내외 도로에 각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3):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p>7. 공부와의 차이</p> <p>없음.</p>	<p>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p> <p>1)임대관계:없음. 2)기타사항:없음.</p>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2) 철근콘크리트구조,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5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및 치장석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및 프로젝트창호임.

2. 이용상태

단독주택(다가구)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임.

3. 설비내역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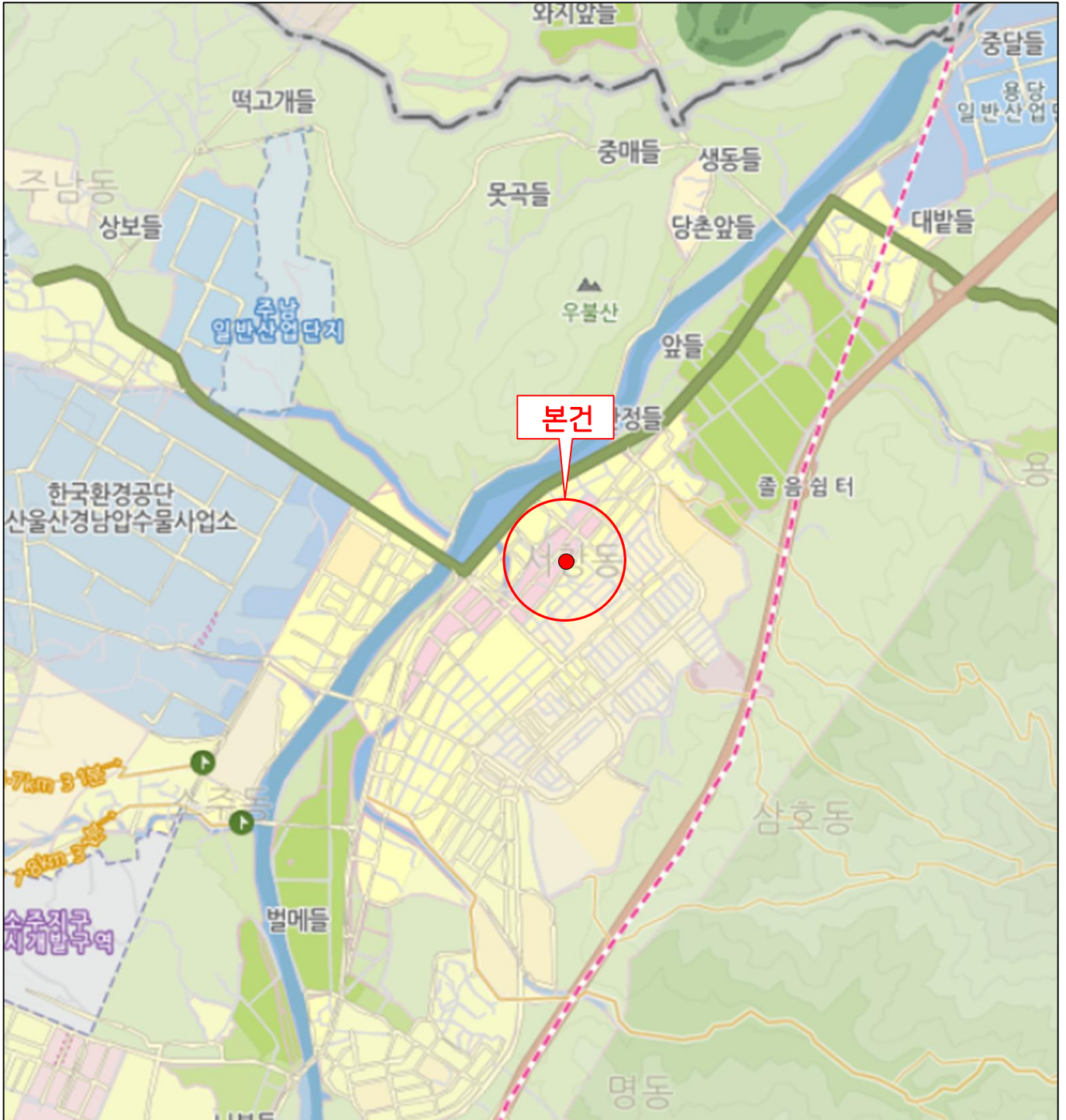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임대관계:없음.
- 2)기타사항:없음.

광역위치도



소재지 및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535-9 외



상세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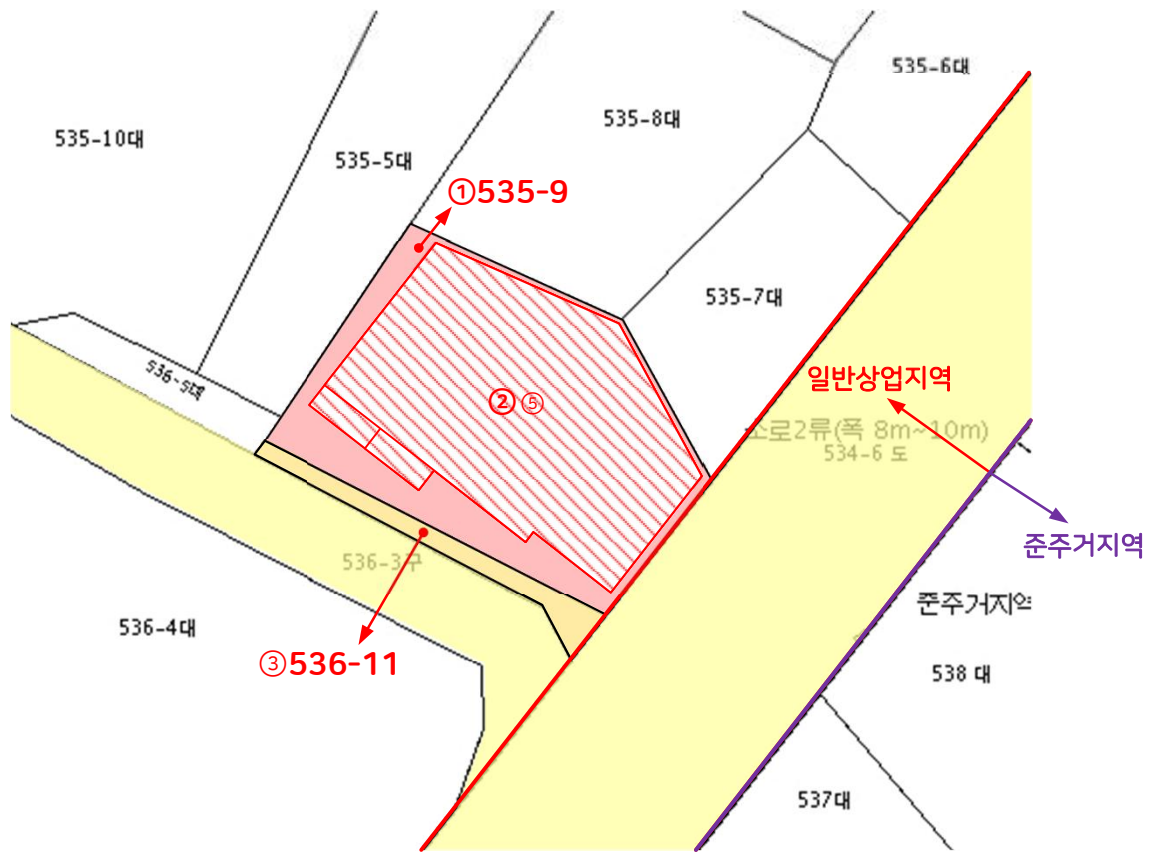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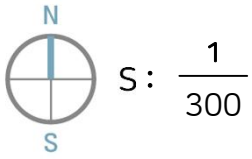


소재지 및
도로명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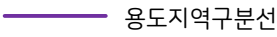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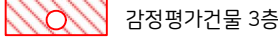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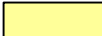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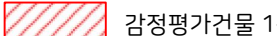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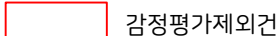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535-9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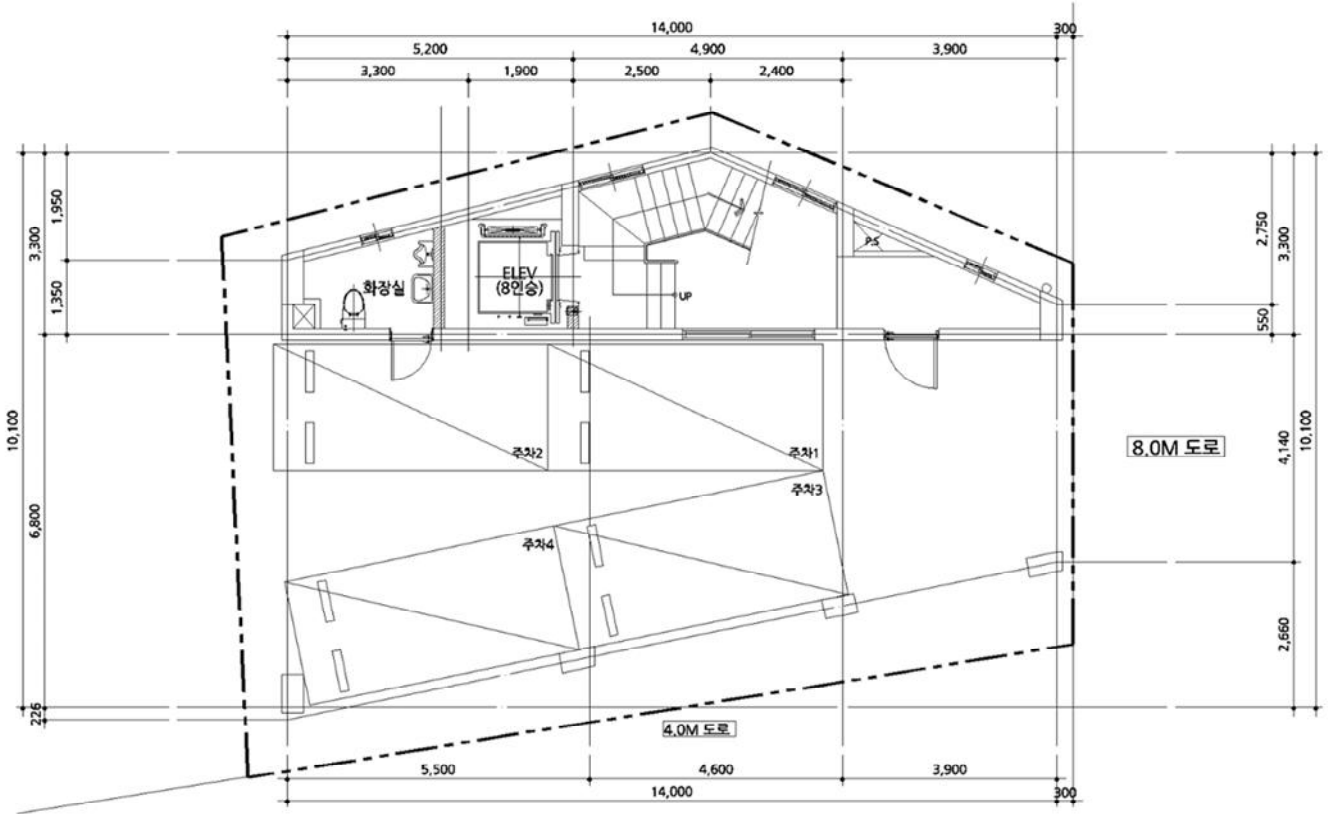
지적 및 건물개황도



범례

	감정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감정평가건물 3층이상
	도로선		감정평가건물 1층		감정평가제외건물
	계획도로선		감정평가건물 2층		부합물 및 증물

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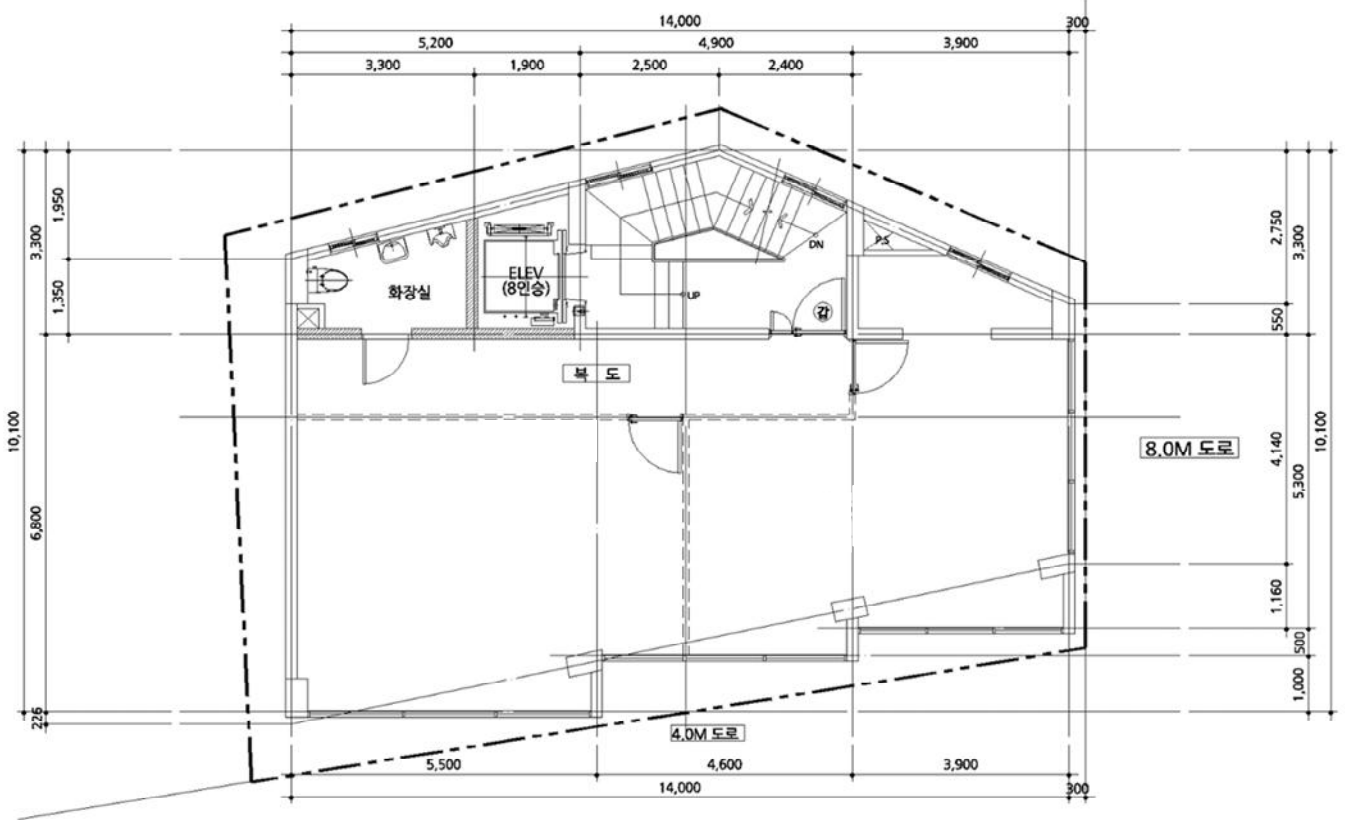


일련번호(2)1층

[건물면적 산출근거]

일련번호(2)1층: 공부상면적 30.03㎡

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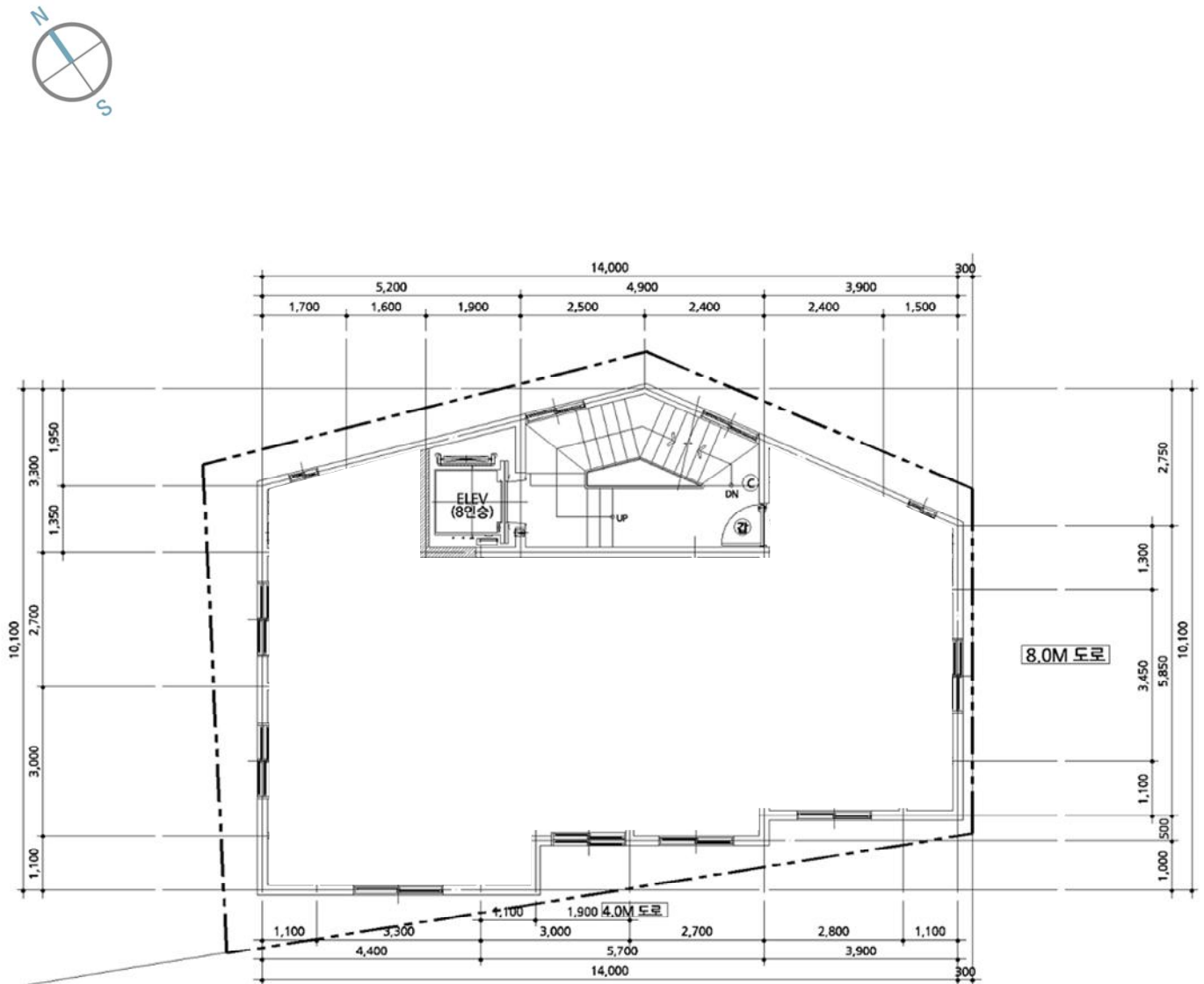


일련번호(2) 2층

[건물면적 산출근거]

일련번호(2) 2층 : 공부상면적 114.78㎡

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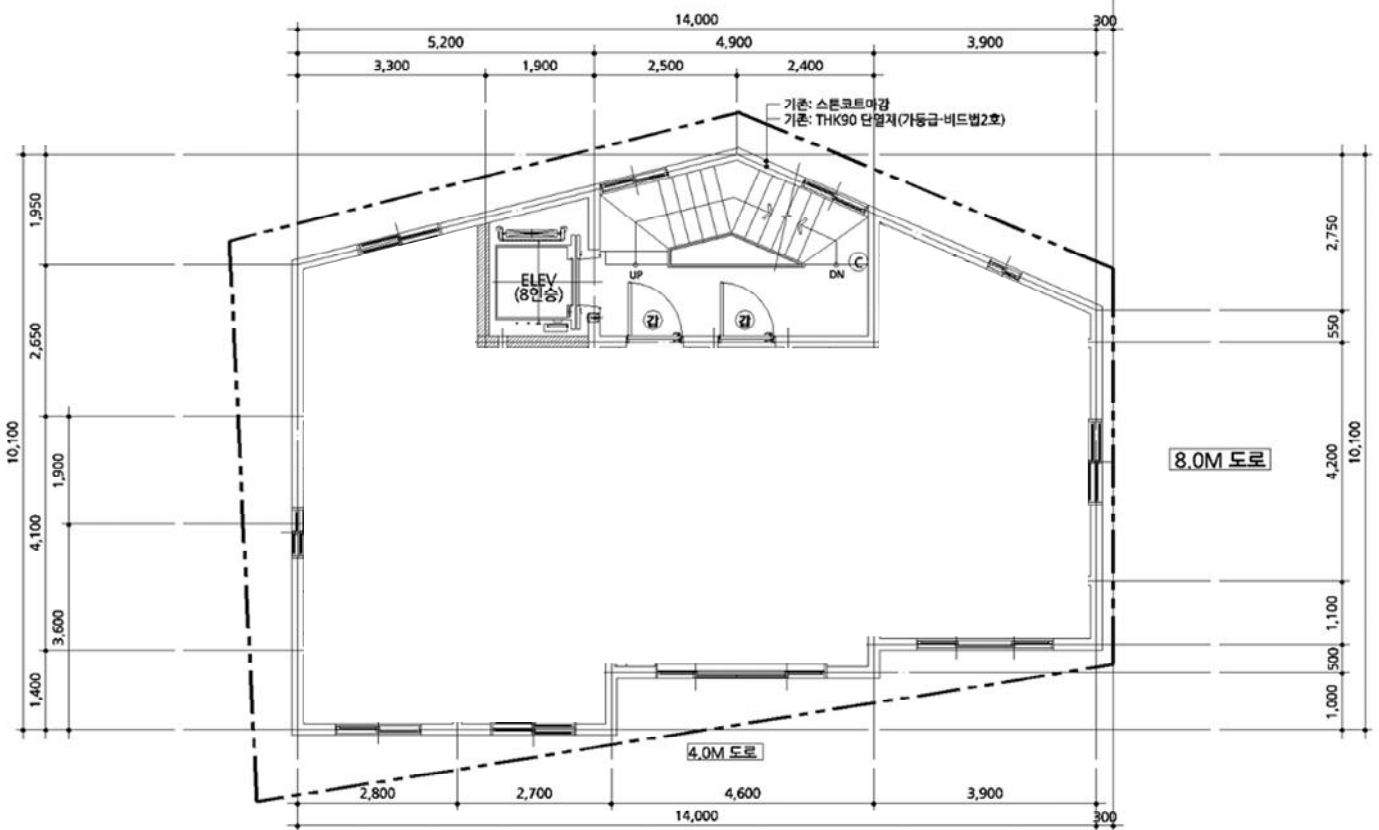


일련번호(2) 3층

[건물면적 산출근거]

일련번호(2) 3층 : 공부상면적 114.78㎡

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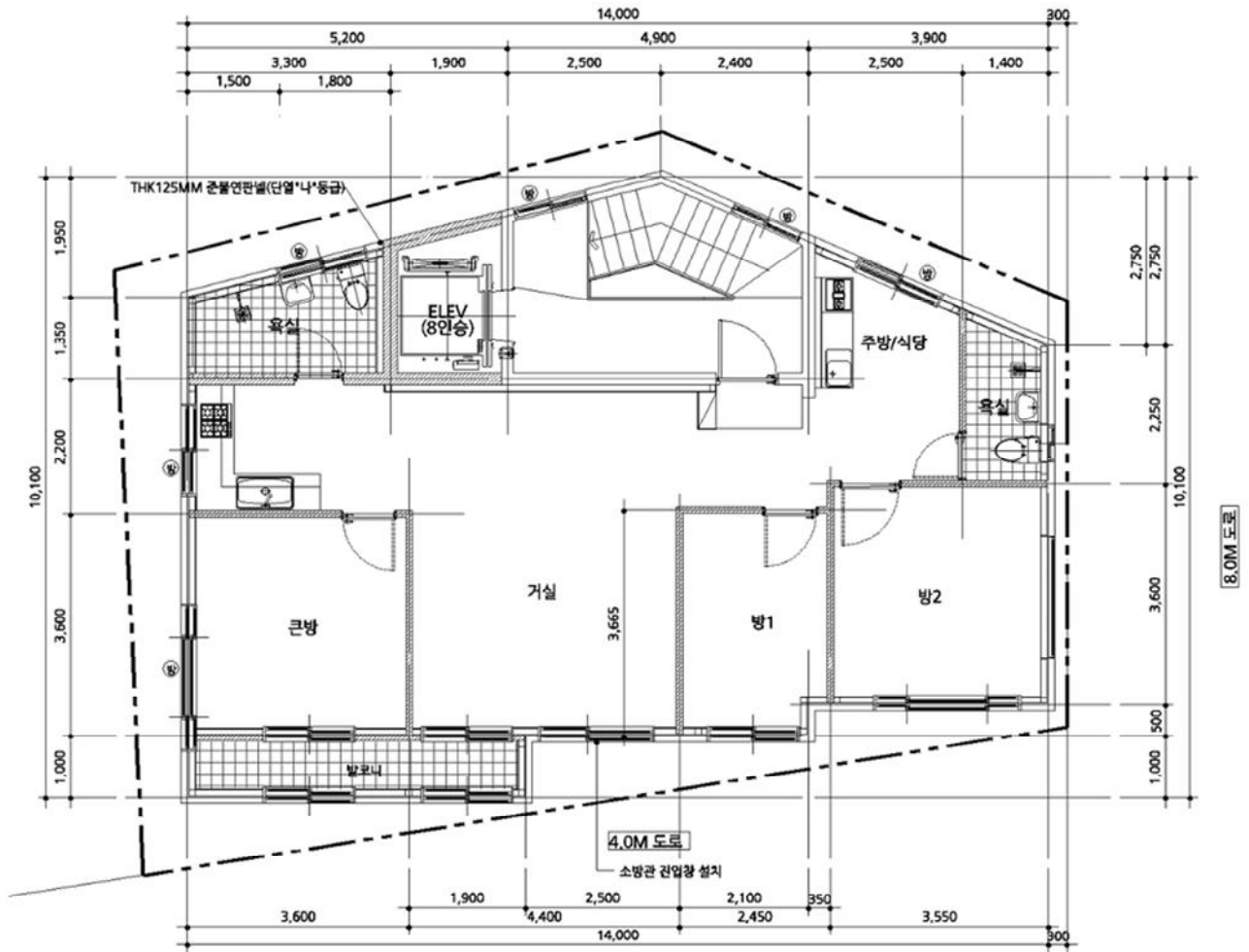


일련번호(2) 4층

[건물면적 산출근거]

일련번호(2) 4층: 공부상면적 110.49㎡

건물개황도



일련번호(2) 5층

[건물면적 산출근거]

일련번호(2) 5층: 공부상면적 112.88㎡

사 진 용 지



본건 일련번호(1~3)전경



일련번호(2) 건물전경



일련번호(2) 1층 호전경



일련번호(2) 1층 호전경

사 진 용 지



일련번호(2) 1층 계단실



일련번호(2) 2층 호전경



일련번호(2) 3층 호전경



일련번호(2) 4층 호전경

사 진 용 지



일련번호(2) 5층 호전경



일련번호(2) 5층 내부전경



일련번호(3) 전경



수 신 :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상준

참 조 : -

제 목 : **감정평가회보**

1. (주)가온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5. 01. 24. 자 귀 제 2025타경10999 로 의뢰하신 『백귀자 소유물건(2025타경10999)』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3. 우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따라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오니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 박윤미 052-274-8811)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성명, 유무선 전화번호, E-mail

별 첨 : 1. 감 정 평 가 서 1부
2. 수수료 청구서 1부 끝.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

지 사장 김 태 우

시행일자 : 가온 2501-09-4080 (2025. 02. 06.)

우)44616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3, 601호 (무거동, 현빌딩 6층 601호) / <http://www.igaon.co.kr>

TEL.(052) 274-8811 FAX.(052) 274-8812 E-MAIL.gaon09@kapaland.co.kr

수수료 청구서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상준 귀하

감정평가서번호 : 가온 2501-09-4080

2025. 02. 06

일백이십팔만팔천일백원정 (₩1,288,100.-)

2025. 01. 24 일자 귀 제 『2025타경10999』 호로 의뢰하신 『백귀자 소유물건(2025타경10999)』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감정평가수수료	920,308	(1,006,732,640×(8/10,000) + 345,000)×0.8 ≈920,308
실비	여비	225,6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10,000
	임대차조사비	—
	공부발급비	5,000
	기타실비	11,000
	특별용역비	—
소계	251,600.-	
합계(공급가액)	₩1,171,000.-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세액)	₩117,100.-	
총계	₩1,288,100.-	
기납부착수금	—	
정산청구액	₩1,288,100.-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2501-4080) 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 신한은행 100-022-274603 [예금주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

지사장 김태우

(Tel. : (052) 274-8811 Fax. : (052) 274-8812)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610-85-33794]